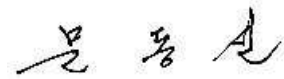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8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035호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군산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산시”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6조 중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 ·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중 “행정·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을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전단 중 “1,000제곱미터”를 “1,500제곱미터”로,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24일이전”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49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를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 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본청 청사 및 시장 집무실(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제외 면적은 시행령 제95조에 따른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청사 : 17,759제곱미터
2. 시장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3,351제곱미터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시의</u> 공유 재산 보호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군산시</u>----- ----- ----- ----- ----- -----.</p>
<p>제2조(관리책임) ①<u>시장</u>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2조(관리책임) ①<u>군산시장</u>(이하 “<u>시장</u>” 이라 한다)-----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업무)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u>법</u>” 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u>군산시</u>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u>령</u>”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u>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업무) ①----- ----- ----- ----- <u>군산시</u> (이하 “<u>시</u>” 라 한다) ----- -----.</p> <p>②----- -----.</p> <p>1.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 · 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  
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생략)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  
당하는 재산의 취득 · 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생략)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 · 보  
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 나. (생략)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6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

3. 행정재산-----  
-----  
-----  
-----

4. 일반재산-----

5. (현행과 같음)

③-----  
-----  
-----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7조제2항-----  
-----

2. 「건축법」 제57조제1항-----  
-----  
-----

3. (현행과 같음)

4. ----- 행정재산-----  
-----

가. · 나. (현행과 같음)

제3장 행정재산

제16조(관리 및 처분) -----

은 관리하는 행정재산 · 보존  
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  
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사용  
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  
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 · 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 수익허  
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제18조(사용 · 수익허가) 행정재

산 · 보존재산을 사용 · 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  
시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19조(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

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  
· 보존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부를 비치하고 기록 · 보존하여  
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같음

----- 행정재산-----  
-----  
-----  
-----.

제17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  
-----  
-----  
-----  
-----.

② 행정재산-----  
-----  
-----  
-----.

1. · 2.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 · 수익허가) 행정재

산-----  
-----  
-----.

1.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

치) ----- 행정  
재산-----  
-----  
-----

할 수 있다.

제20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  
----- 행정재산-----  
-----  
-----  
-----  
-----  
-----

②-----  
----- 행정재산-----  
-----  
----- 행정재산-----  
-----  
-----  
-----.

③----- 행정  
재산-----  
-----  
-----  
-----  
-----  
-----

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생략)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1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생략)

제4장 잡종재산

제22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행  
정재산-----  
-----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4장 일반재산

제22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  
-----  
-----  
-----  
-----  
-----  
-----.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일반재산-----  
-----  
-----  
-----

우는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략)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  
----- 일반재산 -----  
-----  
-----  
-----.

③-----  
----- 일반재산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 일반재산 -----  
-----  
-----  
-----.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2.·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

⑤-----  
-----  
----- 일반재산 -----  
-----  
-----  
-----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

2.·3. (현행과 같음)

4. -----  
----- 1,500제곱미터 -----  
-----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24일이전-----  
-----  
-----  
-----  
-----  
-----  
-----  
-----  
-----.



<신 설>

제45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법  
 제94조의3 제2항에 따라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본청 청  
 사 및 시장 집무실(비서실과 접  
 견실을 포함한다),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청사는 해당 건축물  
 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  
 되, 제외 면적은 시행령 제95조  
 에 따른다)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 1. 본청 청사 : 17,759제곱미터
- 2. 시장 집무실 : 99제곱미터
- 3. 의회 청사 : 3,351제곱미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용어 통일 및 분류체계 단순화 (안 제3조 ~ 안 제39조)

- 행정·보존재산 ⇒ 행정재산, 잡종재산 ⇒ 일반재산

나. 수의계약 매각대상 기준 완화 (안 제38조제1항제4호)

- 면적 : 동지역 1,000㎡ ⇒ 1,500㎡, 읍·면지역 2,000㎡ ⇒ 3,000㎡
- 건축연도 : 1981년 4월 30일 이전 ⇒ 1989년 1월 24일 이전

다. 청사 및 집무실의 면적기준 신설 (안 제45조의2)

- 본청 청사 기준 면적 : 17,759제곱미터 이하
- 시장 집무실 기준 면적 : 99제곱미터 이하(비서실, 접견실 포함)
- 시의회 청사 기준 면적 : 3,351제곱미터 이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나. 개정 조례안

다. 신·구조문 대비표

군산시 공고 제2012-1658호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8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036호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1(토지분할허가기준) 영“별표 1의2”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  
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  
할 할 수 있다.

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이상, 도시외  
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되지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4의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                      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토                      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4. &lt;삭 제&gt;</p> <p>5. 「<u>자연환경보전법</u>」 제34조                      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토                      지</p> <p>② (생 략)</p> <p>&lt;신 설&gt;</p>	<p>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lt;현행과 같음&gt;</p> <p>5. &lt;삭제&gt;</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의1(토지분할허가기준) 영  <u>“별표 1의2” 제2호 라목의 규</u>  <u>정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따라</u>  <u>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u>  <u>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u>  <u>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u>  <u>분할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u>  <u>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u>  <u>있다.</u></p> <p>1.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                      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p>

이상, 도시외 지역은 1,650㎡ 이상으로 한다.

2.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되지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 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 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

※ 시행령 및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 한다]

1. ~ 19 (생략)

1. ~ 19 (현행과 같음)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 23718호, 2012. 4. 10]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계획조례개정(2011. 12. 26)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제한관련 조항 신설(안 제23조의 1)
  - ▶ 공유지분 및 매매에 의해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이상, 도시의 지역은 1,650㎡ 이상으로 규정.

- ▶ 분할된 토지의 재 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규정을 둠.
  -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할 경우 바둑판식 또는 택지식 형태의 토지분할
-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련 호 삭제(안 제19조제1항제5호)
- ▶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 안 별표 4
- ▶ 18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층수제한 폐지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토지정보과, 건축과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8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037호

##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를 “군산에 소재를 두고 3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 법인 또는 교육기관에”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제안이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의 이론과 현장체험을 위하고, 시설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그동안 민간위탁과정과 선정에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들어 시민의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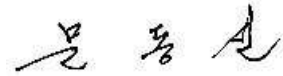
- 가. 위탁운영의 범위중 “비영리법인”을 “군산에 소재를 두고 3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 법인”으로 수정하고, “단체에게”를 “교육기관에”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 나. 기 수탁자와 위탁기관 연장계약 필요시 단서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로 한 조항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로 변경 함.(안 제9조제6항)

## 3. 참고사항

- 가. 개정조례안
- 나. 신·구 조문 대비표

군산시의회의결을 얻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8월 16일

군산시 조례 제1038호

###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군산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경기장(잔디구장, 육상트랙)·테니스장·야구장·게이트볼장”를 “월명주경기장·월명테니스장·월명야구장·월명게이트볼장·월명족구장”으로 하고, 같은조 “금강공원축구장 등 정식 인정대회가 가능한 표준시설”을 “금강공원 축구장·군산시궁도장 등 정식 인정대회가 가능한 표준시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운동경기나 연습 또는 그 이외의 행사를 위하여 체육시설(주경기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를 “운동경기나 연습

또는 그 이외의 행사를 위하여 군산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사용료 체납등)"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실내수영장의 개장시간은 06:00~18:00까지로 한다."를 "월명 실내수영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06:00~20:00, 토요일 06:00~18:00, 공휴일 09:00~18:00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없다"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월명야구장, 월명족구장, 수송공원축구장, 생말공원축구장, 금강공원축구장 초과요금 및 전용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사용목적	전용사용료(원)		비 고
		휴 일 (토요일 포함)	평 일	
월 명 야 구 장	체육경기	50,000	40,000	· 야구경기는 1게임(4시간) 원칙 · 4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
	체육이외	105,000	60,000	
월 명 족 구 장	체육경기	10,000	5,000	· 2시간 기준
수송공원 축 구 장	체육경기	30,000	20,000	· 2시간 기준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
	체육이외	100,000	60,000	
생말공원 축 구 장	체육경기	30,000	20,000	· 2시간 기준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
	체육이외	100,000	60,000	
금강공원 축 구 장	체육경기	30,000	20,000	· 2시간 기준 · 4시간 기준(표준초과시 5할 가산)
	체육이외	100,000	60,000	

○ 이후 조성되는 체육시설은 상기 “전용사용료”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2 체육시설 이용료 중 월명테니스장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개 인 (1인당 이용료)	비 고
월명테니스장 (1면당)	2시간당	2,000	

별표2 표 외의 부분중 “테니스장의 클럽회원은 1면당 200,000원”을 “테니스장의 클럽회원은 1면당 300,000원”으로 한다.

별표3 부대시설 사용료 중 족구장 및 냉·난방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별	기 준	금 액
음향시설	1일 1회	○ 월명체육관 : 100,000원 + (5,000원×마이크수) ○ 월명주경기장 : 20,000원 + (5,000원×마이크수) ○ 월명야구장 : 20,000원 + (5,000원×마이크수)
조 명	1일 1회	○ 월명야구장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월명테니스장 : (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단,클럽회원 월 조명사용료 : 시간당관허요금×사용시간×20일×1면) ○ 월명주경기장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월명체육관 :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월명족구장 : (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냉·난방	1일	전기료 및 연료대금(냉방은 전기료)

별표5 상행위 및 광고물 시설 사용료 중 게시등 부착광고물(야구장 외야 펜스)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에드별륜 게양	1일 1개	30,000원 (1일초과 5,000원/일)	
게시등 부착 광고물 (월명야구장, 월명주경기장)	건당 1.2m × 10m이내	5일 이내 100,000원 (1일초과 10,000원/일)	기준면적 초과 광고물설 치시 기본요금에 초과면 적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게시등 부착광고물 (월명야구장 외야펜스)	건당 1.5m × 8m이내	1,000,000원 (당해년도에 한함)	

별표6 월명실내수영장 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 받은 자임.(1일 1회에 한함)
-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체육시설"이라 함은 월명종합경기장 주경기장(잔디구장, 육상트랙)·테니스장·야구장·게이트볼장·월명체육관·월명실내수영장·월명공원테니스장·수송공원축구장·생말공원축구장·금강공원축구장 등 정식 인정대회가 가능한 표준시설을 갖춘 각종 경기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p> <p>1.----- <u>월명주경기장·월명테니스장·월명야구장·월명게이트볼장·월명족구장</u>·월명체육관 ----- -----금강공원축구장·<u>군산시궁도장</u> 등 정식 ----- ----- -----말한다.</p>
<p>제3조(사용허가) ① 운동경기나 연습 또는 그 이외의 행사를 위하여 <u>체육시설(주경기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u>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p>	<p>제3조(사용허가) ① ----- -----위하여 <u>군산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u> ----- ----- <u>인터넷, 전화, 우편, 팩스로도</u> ----- ----- -----.</p>
<p>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과 같이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1. ~ 3.(생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제9조(사용시간) ① ~ ④(생략) ⑤실내수영장의 개장시간은 06:00~18:00 까지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p> <p>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시장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이용 료를 감면·할인할 수 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22조(매표 및 검인) ②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입장권·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p>	<p>1. ~ 3.(현행과 같음) 4. 기타-----인정할 때 <u>(사용료 체납 등)</u></p> <p>제9조(사용시간) ① ~ ④(현행과 같음) ⑤<u>월명</u>실내수영장의 <u>운영시간은 평일06:00 ~20:00, 토요일06:00~18:00, 공휴일09:00 ~18:00</u>까지로 한다. 단, 시장이----- -----있다.</p> <p>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할인)시장은 ----- -----있다. ①다음----- -----감면할 수 있다. <u>다만, 중복하여 할인을 받을 수 없다.</u></p> <p>제22조(매표 및 검인) ②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입장권·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u>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u></p>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사용목적	휴 일 (토요일포함)	평 일	초 과 요 금	사용목적	휴 일 (토요일포함)	평 일	초 과 요 금
주 경 기 장	우레탄 트랙	체육경기 체육이의	75,000 105,000	50,000 70,000	8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1/2가산	----- -----	----- -----	----- -----
	인조잔 디구장	체육경기	75,000	50,000	· 축구경기는 1게임 (2시간)원칙(초과 게임당2할 가산)	-----	-----	-----
		체육이의외	105,000	70,000	· 4시간 표준 초과시 표준액의1/2가산	-----	-----	-----
	야 구 장	체육경기	50,000	40,000	· 야구경기는1게임 (4시간) 원칙 <u>(초과게임당 5할가산)</u>	-----	-----	· 야구경기는1게임 (4시간) 원칙 <u>&lt;삭제&gt;</u>
체육이의외		105,000	60,000	· 4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1/2가산	-----	-----	· 4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1/2가산	
테니스장 (1면당)	체육경기	15,000	10,000	8시간표준초과시	-----	-----	-----	
	체육이의외	17,000	12,000	표준액의1/2가산	-----	-----	-----	
월명체육관	체육경기 - 주간(1회) - 야간(1회)	60,000	40,000	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1/2가산	-----	-----	-----	
		90,000	60,000		-----	-----	-----	
	체육이의외 - 주간(1회) - 야간(1회)	300,000	200,000	8시간 표준초과시 표준액의 1/2가산	-----	-----	-----	
		450,000	300,000		-----	-----	-----	
족 구 장	체육경기	<u>무료</u>	<u>무료</u>	<u>&lt;신설&gt;</u>	체육경기	<u>10,000</u>	<u>5,000</u>	<u>· 2시간 기준</u>
	체육이의외				체육이의외			
수송공원 축 구 장	체육경기	30,000	20,000	· 2시간 기준 <u>(초과게임당 2할 가산)</u>	체육경기	30,000	20,000	· 2시간 기준 <u>&lt;삭제&gt;</u>
	체육이의외	<u>50,000</u>	<u>30,000</u>	· 4시간 기준 (표준초과시 5할 가산)	체육이의외	<u>100,000</u>	<u>60,000</u>	· 4시간 기준 (표준초과시 5할 가산)
생말공원 축 구 장	체육경기	30,000	20,000	· 2시간 기준 <u>(초과게임당 2할 가산)</u>	체육경기	30,000	20,000	· 2시간 기준 <u>&lt;삭제&gt;</u>
	체육이의외	<u>50,000</u>	<u>30,000</u>	· 4시간 기준 (표준초과시 5할 가산)	체육이의외	<u>100,000</u>	<u>60,000</u>	· 4시간 기준 (표준초과시 5할 가산)
금강공원 축 구 장	체육경기	30,000	20,000	· 2시간 기준 <u>(초과게임당 2할 가산)</u>	체육경기	30,000	20,000	· 2시간 기준 <u>&lt;삭제&gt;</u>
	체육이의외	<u>50,000</u>	<u>30,000</u>	· 4시간 기준 (표준초과시 5할 가산)	체육이의외	<u>100,000</u>	<u>60,000</u>	· 4시간 기준 (표준초과시 5할 가산)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주간 사용자가 야간 사용시간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는 야간사용자로 간주함
- 등록장애인은 50%를 할인 징수함
- <신설>

- -----
- -----
- -----
- -----
- 이후 조성되는 체육시설은 상기 “전용사용료”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

## 체 육 시 설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기 간	개 인 (1인당 이용료)	비 고	기 간	개 인 (1인당 이용료)	비 고
주경기장(육상트랙)	2시간당	300		-----	----	
주경기장(인조잔디구장)	"	2,000		-----	-----	
야 구 장	"	2,000		-----	-----	
테 니 스 장 (1면당)	"	<u>1,000</u>		-----	<u>2,000</u>	
월 명 체 육 관	"	1,000		-----	-----	

(현 행)

- 어린이의 이용료는 기본료의 70%를 징수함.
- 단체는 동일종목 1개팀(동일소속) 20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기본료의 80%를 징수함
- 월 회원 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을 징수함
- 테니스장의 클럽회원은 1면당 200,000원을 징수한다.  
(단, 1면당 사용인원을 30인 이하로하며, 각종 경기등 행사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테니스 수강료는 월 50,000원을 징수한다. (단, 수강료 납부한자는 입장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기본료의 50%를 가산 징수함
-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기본료의 50%를 징수함.

(개 정 안)

- -----
- -----
- -----
- -----
- ----- 300,000 -----
- -----
- -----
- -----
- -----

【별표 3】

## 부대시설사용료

구분	현행		개정안	
	기준	금액	기준	금액
전기	1 시간당	관허요금	-----	-----
음향시설	1일 1회	월명체육관: 10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주경기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야구장 : 20,000원 + (5,000원 × 마이크수)	-----	<del>월명주경기장</del> <del>월명야구장</del>
전광판	1일 1회	2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
조명	1일 1회	○야구장: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테니스장(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단,클럽회원 월 조명사용료: 시간당관허요금×사용시간×20일x1면) <u>〈신설〉</u> ○주경기장: 50,000원(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체육관: 50,000원(전기기본사용료×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	-----	<del>○월명야구장</del> <del>○월명테니스장</del>  <u>○족구장: (전기기본사용료 × 일수/30)+전기사용관허요금</u> <del>○월명주경기장</del> <del>○월명체육관</del>
권투링	1일 1회	20,000원 1일 초과하는 매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정수 단,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	<u>〈삭제〉</u>	<u>〈삭제〉</u>
후로링기바	1 일	50,000원 1일 초과하는 매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정수	-----	-----
배구 매트	1 일	200,000원 1일 초과하는 매일에 대하여 기본액 50% 정수 단,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	----	-----
냉 난방	1 일	전기료 및 유류대 (냉방은 전기료)	-----	전기료 및 <u>연료대금</u> (냉방은 전기료)
수도료	1 회	수도사용 및 설비	-----	-----
무대사용료	1 회	30,000원	-----	-----
집기사용료	1 회	연설대 1개당: 1,000원 탁자 1개당: 500원 의자 1개당: 철재 100원 목재 200원	-----	-----

(현행)

- 한 경기장에 전광판 조명타워 등 2개 시설을 동시 사용할 때 전기 기본 요금은 1개 시설에만 적용
- 1일 1회라 함은 사용자가 1회의 경기 또는 공연시에 사용함을 기준함. 단, 동일한 사용자가 1일에 2회이상 연속 사용하기 위하여 1회 입장료 이상의 금액으로 대표하였거나(야구의 경우 더블헤더), 2회에 걸쳐 대표(사용)할 때는 2회 사용으로 적용한다.

(개정안)

- -----
- -----
- -----
- -----
- -----
- -----

【별표 5】

### 상행위 및 광고물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현 행			구 분	개 정 안		
	기 준	금 액	비 고		기 준	금 액	비 고
에드빌론 계약	1일 1개	30,000원 (1일초과 5,000원/1일) <u>년간 2,000,000원</u>	· 야구장 전광판 좌우 30m이내는 요금의 20%추가 · 기준면적 초과 광고물 설치시 기본요금에 초과면적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	-----	<삭제>  · 기준면적 초과 광고물 설치시 기본요금에 초과면적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게시등 부착 광고물 (야구장, 주경기장)	건당 1.2m×10m 이내	5일이내 100,000원 (1일초과 10,000원/일)		-----	-----	-----	
<u>&lt;신 설&gt;</u>				-----	-----	-----	
(월명체육관)	건당	년간 1,000,000원		-----	-----	-----	
게시등 부착 및 입식 광고물	1, 2m×10m 이내	5일이내 50,000원 (1일초과 5,000원/일)		-----	-----	-----	
(노 점) 고정식 이동식	1일 개업소 1인 1일	m <sup>2</sup> 당 1,000원 10,000원	차량포함 차량제외	-----	-----	-----	

【별표 6】

### 월명실내수영장 이용료

(단위 : 원)

구 분	현 행		구 분	개 정 안	
	이 용 료			이 용 료	
	일일입장	월 회원권		일일입장	월 회원권
어 른	2,500	50,000	-----	-----	-----
학 생 · 군 인	2,000	40,000	-----	-----	-----
어린이 · 경노대상	1,500	30,000	-----	-----	-----
유 아	700	14,000	-----	-----	-----

-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요금의 80%를 징수한다.
- 월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권을 교부 받은 자임.  
<신설>
- 등록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50%를 징수함.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월 회원 이용료에 한해 85%를 징수한다.
- 단, 중복할인은 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 제7호는 예외로 한다.
- <신설>

- -----
- -----
- (1일 1회에 한함)
- -----
- -----
- -----
- -----
- ----- <삭제>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8월 16일

군산시 규칙 제512호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호 중 “지출원---경리담당”을 “지출원---경리계장”으로,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을 “수입금  
출납원---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으로, “일상경비출납  
원---각 관·과·소 경리업무담당”을 “일상경비출납원---각 관·과·소 경리업  
무계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 중 “지출원---의정담당”을 “지출원---의정계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3호 중 “지출원---경리업무담당”을 “지출원---경리업무계장”으로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을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으  
로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경리업무담당”을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경리업무계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4호 중 “일상경비출납원---경리업무담당”을 “일상경비출납원---경

리업무계장”으로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을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5호 중 “지출원---읍·면·동 총무업무담당”을 “지출원---읍·면·동 총무업무계장”으로 “수입금출납원---읍·면·동 총무업무담당”을 “수입금출납원---읍·면·동 총무업무계장”으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읍·면·동 총무업무담당”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읍·면·동 총무업무계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부담금, 양여금”을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협의”를 “합의”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지방세법」 적용)”을 “(지방세 법규적용)”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 단서 중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정보처리장치(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이와 연계된 “전자지출시스템”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정보처리장치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원인행위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담당자를 말하고, 계약을 제외한 일반지출에 관한 사항은 소관 관·과·소의 지출품의담당자 또는 원인행위요청담당자를 말한다) : 정당

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 전산입력 등

제5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용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79조제5항 본문 중 “보통예금계좌”를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로 한다.

제80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하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8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11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1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5조를 삭제한다.

제127조제3항 중 “특히”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을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로 한다.

별표 1의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중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의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한다.

별지 제81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겸용)란 다음에 별지 제81-1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1-1호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탁서

납입통지서

영수증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금고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납부자주소	
성 명 _____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 xxxxx-x 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_____	
건 명 _____	
현 금 _____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_____	
금고 인	
금고	
금고 인	
금고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p>	<p>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 ----- -----.</p>
<p>1. 본청</p>	<p>1. ---</p>
<p>징 수 관 --- 자치행정국장</p>	<p>-----</p>
<p>분 임 징 수 관 --- 징수과장, 세외수입 주관 관·과·소장</p>	<p>----- -----</p>
<p>경 리 관 --- 자치행정국장</p>	<p>-----</p>
<p>분 임 경 리 관 --- 회계과장, 각 관·과·소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p>	<p>----- ----- -----</p>
<p>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p>	<p>-----</p>
<p>채 권 관 리 관 --- 소관 관·과·소장</p>	<p>-----</p>
<p>총괄채무관리관 --- 자치행정국장</p>	<p>-----</p>
<p>채 무 관 리 관 --- 소관 관·과·소장</p>	<p>-----</p>
<p>총괄기금관리관 --- 자치행정국장</p>	<p>-----</p>
<p>기 금 관 리 관 --- 소관 관·과·소장</p>	<p>-----</p>
<p>지 출 원 --- 경리담당</p>	<p>지 출 원 --- 경리계장</p>
<p>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담당, <u>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u></p>	<p>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계장, <u>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계장</u></p>
<p>일상경비출납원 --- 각 관·과·<u>소 경리업무담당</u></p>	<p>일상경비출납원 --- 각 관·과·<u>소 경리업무계장</u></p>
<p>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 업무담당자</p>	<p>----- -----</p>

2. 군산시의회

징수관 --- 사무국장

분임징수관 --- 의사과장

경리관 --- 사무국장

분임경리관 --- 의사과장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지출원 --- 의정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  
업무담당자

3. 제1관서

징수관 --- 관서의장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경리관 --- 관서의장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채권관리관 --- 관서의장

채무관리관 --- 관서의장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  
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경리업무  
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  
업무담당자

4. 기타 관서·임시관서

2. -----

-----

-----

-----

-----

-----

-----

지출원 --- 의정계장

-----

-----

3. -----

-----

-----

-----

-----

-----

-----

-----

-----

지출원 --- 경리업무계장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  
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경리업무  
계장

-----

-----

4. -----

징 수 관 --- 관서의 장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  
시관서의 장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  
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  
업무담당자

5. 읍·면·동

징 수 관 --- 읍·면·동장

경 리 관 --- 읍·면·동장

채권관리관 --- 읍·면·동장

지 출 원 --- 읍·면·동 총무업  
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읍·면·동 총  
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읍·  
면·동 총무업무담당

② ~ ⑤ (생 략)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  
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  
에게 다음 각 호 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생 략)
2. 교부금, 부담금, 양여금, 보

-----  
-----  
-----

-----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계장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  
계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계장

-----  
-----

5. -----

-----

-----

-----

지 출 원 --- 읍·면·동 총무업  
무계장

수입금출납원 --- 읍·면·동 총  
무업무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읍·  
면·동 총무업무무계장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부담금-----

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생략)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2. (생략)

3. 과오납금의 반환

4. (생략)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에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1. ~ 6. (생략)

-----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현행과 같음)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  
-----  
-----  
-----  
-----

- .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 6. (현행과 같음)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정보처리장치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 ②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지체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 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 ③ 정보처리장치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 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서를 첨부하여 이를 영수인에  
같음한다. <후단 신설>

제58조(송금 통지) 별지 제73호서  
식의 (송금·집합)지급명령 또  
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  
61호서식의 약식지급명령에 따  
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별지 제71호서식의 송금통  
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  
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

-----  
-----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  
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같음할 수 있다.

제58조(송금 통지) -----  
-----  
-----  
-----  
-----  
-----  
-----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  
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  
정) ①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  
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용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  
차) ① -----  
-----



음한다.

④·⑤ (생략)

<신설>

제112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당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별지 제79호서식의 지급명령서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3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로 같음하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같음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 소관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제112조(지급의 증명) -----  
-----  
-----  
-----  
-----  
-----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같음할 수 있다.

제113조(송금지급절차) -----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  
 -----  
 -----  
 -----  
 -----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생략)  
 <신 설>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①·② (생략)  
 <신 설>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2조의2에 따라 시금고 및 시금고지출대행점, 시공금지급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과 일계표) ① (생략)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별지 제10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과 일계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후단 신설>

제125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  
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5조제5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  
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  
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  
을 구매할 수 있다.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② (생략)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  
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  
정할 수 있다.

-----  
-----

--. 이 경우 제52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를 전자  
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  
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  
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영관)를 달리 --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lt;별표 1&gt;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p> <p>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p> <p><input type="radio"/> ----</p> <p><input type="radio"/> -----</p> <p><input type="radio"/> <u>상하수도사업소</u></p> <p><input type="radio"/> -----</p>	<p>&lt;별표 1&gt;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p> <p>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p> <p><input type="radio"/> ----</p> <p><input type="radio"/> -----</p> <p><input type="radio"/> <u>수도사업소</u></p> <p><input type="radio"/> -----</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style="text-align: center;">&lt;별지 제81-1호 서식&gt;</p> <p style="text-align: center;"><b>세입세출외원금납부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위 탁 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납 입 통 지 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 width: 33%;">영 수 증</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td></tr> <tr><td>납부번호</td><td>20xx-xxxxxx-xxxxxx</td></tr> </table> <p>금 _____ 원(금 _____ 원)</p> <p>정리구분 _____</p> <p>건 명 _____</p> <p>현 금 _____</p> <p>위와 같이 납부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출납원 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td></tr> <tr><td>xx은행</td><td>xxxx-xx-xxxxxx</td></tr> </table> <p>금고 귀하</p>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td></tr> <tr><td>납부번호</td><td>20xx-xxxxxx-xxxxxx</td></tr> </table> <p>금 _____ 원(금 _____ 원)</p> <p>정리구분 _____</p> <p>건 명 _____</p> <p>현 금 _____</p> <p>납부자주소 _____</p> <p>성 명 _____</p> <p>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금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td></tr> <tr><td>xx은행</td><td>xxxx-xx-xxxxxx</td></tr> </table> <p>세입세출외원금출납원 귀하</p> </td> <td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td></tr> <tr><td>납부번호</td><td>20xx-xxxxxx-xxxxxx</td></tr> </table> <p>금 _____ 원(금 _____ 원)</p> <p>정리구분 _____</p> <p>건 명 _____</p> <p>현 금 _____</p> <p>위와 같이 영수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납부자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_____ 금고 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td></tr> <tr><td>xx은행</td><td>xxxx-xx-xxxxxx</td></tr> </table> <p>납부자 귀하</p> </td> </tr> </table> <p>※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p>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td></tr> <tr><td>납부번호</td><td>20xx-xxxxxx-xxxxxx</td></tr> </table> <p>금 _____ 원(금 _____ 원)</p> <p>정리구분 _____</p> <p>건 명 _____</p> <p>현 금 _____</p> <p>위와 같이 납부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출납원 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td></tr> <tr><td>xx은행</td><td>xxxx-xx-xxxxxx</td></tr> </table> <p>금고 귀하</p>	세입세출외원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	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td></tr> <tr><td>납부번호</td><td>20xx-xxxxxx-xxxxxx</td></tr> </table> <p>금 _____ 원(금 _____ 원)</p> <p>정리구분 _____</p> <p>건 명 _____</p> <p>현 금 _____</p> <p>납부자주소 _____</p> <p>성 명 _____</p> <p>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금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td></tr> <tr><td>xx은행</td><td>xxxx-xx-xxxxxx</td></tr> </table> <p>세입세출외원금출납원 귀하</p>	세입세출외원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	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td></tr> <tr><td>납부번호</td><td>20xx-xxxxxx-xxxxxx</td></tr> </table> <p>금 _____ 원(금 _____ 원)</p> <p>정리구분 _____</p> <p>건 명 _____</p> <p>현 금 _____</p> <p>위와 같이 영수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납부자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_____ 금고 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td></tr> <tr><td>xx은행</td><td>xxxx-xx-xxxxxx</td></tr> </table> <p>납부자 귀하</p>	세입세출외원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	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
위 탁 서	납 입 통 지 서	영 수 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td></tr> <tr><td>납부번호</td><td>20xx-xxxxxx-xxxxxx</td></tr> </table> <p>금 _____ 원(금 _____ 원)</p> <p>정리구분 _____</p> <p>건 명 _____</p> <p>현 금 _____</p> <p>위와 같이 납부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출납원 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td></tr> <tr><td>xx은행</td><td>xxxx-xx-xxxxxx</td></tr> </table> <p>금고 귀하</p>	세입세출외원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	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td></tr> <tr><td>납부번호</td><td>20xx-xxxxxx-xxxxxx</td></tr> </table> <p>금 _____ 원(금 _____ 원)</p> <p>정리구분 _____</p> <p>건 명 _____</p> <p>현 금 _____</p> <p>납부자주소 _____</p> <p>성 명 _____</p> <p>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금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td></tr> <tr><td>xx은행</td><td>xxxx-xx-xxxxxx</td></tr> </table> <p>세입세출외원금출납원 귀하</p>	세입세출외원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	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td></tr> <tr><td>납부번호</td><td>20xx-xxxxxx-xxxxxx</td></tr> </table> <p>금 _____ 원(금 _____ 원)</p> <p>정리구분 _____</p> <p>건 명 _____</p> <p>현 금 _____</p> <p>위와 같이 영수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납부자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_____ 금고 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td></tr> <tr><td>xx은행</td><td>xxxx-xx-xxxxxx</td></tr> </table> <p>납부자 귀하</p>	세입세출외원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	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					
세입세출외원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																														
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																														
세입세출외원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																														
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																														
세입세출외원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																														
세입세출외원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																														

<별지 제63-1호 서식>

###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

위탁서

납입통지서

영수증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
금고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납부자주소	
성 명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번호	20xx-xxxxxx-xxxxxx
금 원(금 원)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
납부자 귀하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11·8·25>

#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우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담당을 계장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
- 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중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 (안 제4조)
- 다. 재정사항의 합의를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는 단서 신설 (안 22조)
- 라. 운영수당 현금지급 제한 (안 제52조)
- 마.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업무처리 조항 신설(안 제52조의2 신설)
- 바. 경리관(분임경리관)이 매년 초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 통지 (안 제61조의2 신설)
- 사.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추가 (안 제79조)
- 아.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시 소멸시효 완성전 납부자 고지 의무 신설 (안 제80조제6항 신설)
- 자.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조항 삭제(안 제125조 삭제)
- 차.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와 검사자를 달리 지정(안 제127조) 등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22조, 제76조, 제77조 등
- 나. 개정 조례안 : 별첨
-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8월 16일

군산시 규칙 제513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7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1호내지 6호외”를 “1호부터 6호까지외”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중 “조례”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잡종재산대장”을 “일반재산

대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9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u>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공유재산 관리조례</u>-----                      -----                      -----.</p>
<p>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생략)</p> <p>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lt;개정 99.11.30&gt;</p> <p>1. 본청에서 사용하는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 업무주관과장</p> <p>2. <u>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u>의 소속기관(이하 “관·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 관·소의장</p> <p>3. 본청 및 관·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u>행정재산 및 보존재산</u> - 업무주관과장</p> <p>4. <u>잡종재산</u>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p>	<p>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 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u>행정재산</u> -----</p> <p>2. <u>군산시(이하 “시”라 한다)</u>                      -----                      -----                      ----- <u>행정재산</u> -----</p> <p>3. -----                      ----- <u>행정재산</u> -----                      -----</p> <p>4. <u>일반재산</u>-----                      -----                      -----</p>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  
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6. (생략)

7.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  
정재산 및 보존재산 - 총무과  
장, 읍·면·동장

8. 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잡  
종재산은 회계과장

③ (생략)

제3조(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  
괄) ① ~ ③ (생략)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  
로서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  
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30>

⑤·⑥ (생략)

제4조(관리책임) ① (생략)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  
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

-----  
-----  
-----

5. ----- 행정재  
산 -----

6. (현행과 같음)

7. -----  
행정재산 -----  
-----

8. 1호부터 6호까지외-----  
일반재산-----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  
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재산-  
----- 일반재  
산-----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  
음)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다. <개정 99.11.30>

③ ~ ⑥ (생략)

제11조(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은익재산 신고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 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  
-----  
-----  
-----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 행정재산 -----  
-----  
-----  
-----  
-----  
-----  
-----

②행정재산-----  
-----  
-----  
-----

제24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  
-----

음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  
 다. <개정 99.11.30, 2006.06.1  
 5>

- 1. · 2. (생 략)
- 3. 보존재산대장
- 4. 잡종재산대장
- ② (생 략)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  
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  
 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  
 호서식에의한다.

제29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  
 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 <삭 제>

- 4. 일반재산대장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  
정재산-----  
 -----  
 ---.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  
 -----  
 -----.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용어 통일 및 분류체계 단순화(안 제2조 ~ 안 제29조)

○ 행정·보존재산 ⇒ 행정재산, 잡종재산 ⇒ 일반재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1조)

### 3.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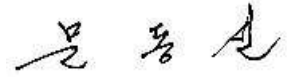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개정 조례안

다. 신·구조문 대비표

군산시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8월 16일

군산시 규칙 제514호

###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시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때
2.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공무원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제15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때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때
3.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때

## 제2장 공무국외여행 허가

제3조(허가권자 등) ① 제2조 따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 장(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속한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긴급한 때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20일 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 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여행자 수칙
3. 항공운임증명서(G.T.R 등)
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관계서류

③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적용하며, 공무국외여행 허가 절차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신청서류의 보완) ①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붙임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완을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여행계획의 변경신청)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

가부서의 장에게 여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 방침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은 적정규모로 최소화하여야 하고,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여행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시 여행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여행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여행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외국 정부기관의 시찰·방문시에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여행출발 40일 전까지 전라북도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 제3장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제7조(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에서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 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3. 소속공무원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4. 시에서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여행을 주관할 때(10명 이상 단체의 범위는 시 산하단체 직원 및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 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밖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여행경비는 「군산시여비조례」에 따라 산출 지급하고,

자비에 의한 국외여행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관계인의 출석)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심사에 필요할 때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 제4장 교육 및 관리

제13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별지 제 2호서식에 따른 해외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연락유지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주관부서와의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업무수행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하는 때에는 허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일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군산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군산시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해외연수자료실에 등록하고,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지정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의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1]

###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

**공무국외여행 방침**

- (주관부서)
- 방침결정
    - 부서장 포함 : 상급자
    - 부서장 이하 : 부서장
  - 허가부서 등과 사전 협의
  - 심사 및 허가기준 내부 자율 점검 및 검토 의견 제시

⇒

**서울행정시스템  
공무여행허가(심사) 신청**

- (주관부서 ⇒ 허가부서)
-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 주관부서의 장 전결
- 《첨부서류》**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2. 여행자 수칙
  3. 항공운임증명서(G.T.R)
  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

⇒

**공무국외여행심사  
및 허가 승인**

- (허가부서)
- 심사방법
    - 심사대상 :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
    - 비대상 : 허가부서의 장 (부서 검토 의견 분석)
  - 심사내용
    - 여행목적 및 필요성,
    - 여행자, 여행지
    - 여행기간, 여행경비 등
  - 허가승인
    - 심사 후 전결규정에 따라 허가

⇒

**허가여부 통보**

- (허가부서 ⇒ 주관부서)
- 여행 허가사항 통보

⇒

**출국 및 업무수행**

- (주관부서)
- 여행자 소양교육 실시
  - 여행 출발사항을 허가 부서에 통보(당일)
  - 보안서약서제출 (출국 3일전)
  - 현지활동(연락유지 등)
    - 특수한 사정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이행
  - 해외여행자 수칙 준수

⇒

**귀 국**

- (주관부서)
- 귀국보고서 제출
    - 전결규정에 따라 보고 후 귀국후 30일 이내
    - 허가권자에게 보고
    - 전자문서시스템 게시관 해외연수자료실에 게시
    - 부서 소관 해외 사례 규정 업무 반영
    - 다른 부서 소관 해외 사례 해당부서 통보

[ 별표 2 ]

##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

### 1. 여행의 필요성

○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

※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 억제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 3.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

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

#### 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 적절한 시기를 선택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함

#### 5. 여행경비의 적정성

- 여비조례에 의한 여행경비 산출·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시 산하기관에 비용전가 금지

※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lt; 별지 제1호서식 &gt;

공무국외여행계획서

##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200 . . ~ 200 . . ( 일간)						
여행국							
방문기관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계						

##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 운 공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 4. 여행효과

< 별지 제2호서식 >

# 공무국외여행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일간)까지 직무연수로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비밀은 물론 기타 취득한 일체의 비밀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제 보안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여 국외여행기간중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범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한다.

- 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및 제4항(일반목적수행)
- 나.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 찬양 등)
- 다. 형법 제99조(공무상 비밀누설 등)
- 라. 군형법 제44조(일반이적)
- 마. 군정법 제47조(명령위반)
- 바. 군령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 . . .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 별지 제3호서식 >

## 공무국외여행보고서 표준서식

### I.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 II.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 III.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IV. 첨부자료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 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 군산시 공무국외여행 규칙

## 1. 제정이유

현재 시행 중인 「군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훈령에서 규칙으로 격상하기 위하여 제정

## 2. 주요내용

### 가.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안 제3조)

-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

### 나. 사전협의 등(안 제6조)

- 공무국외여행방침을 수립할 때
-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은 적정규모로 최소화 하여야 하고,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
-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여행계획 참가, 세미나 등 행사에 공무로 참가 협의 단계시

### 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안 제7조 및 별표2)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행

- “심사기준 : 별표 2

**라.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안 제13조)**

- 공무국외여행자의 여행목적과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참고사항을 출국전에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설명

**마. 공무국외여행자 연락유지 등(안 제14조)**

- 업무수행중 특수사정 발생 또는 지정 기일내에 목적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허가권자 보고
-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현지규범·관습·공중도덕 등 존중

**바.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 및 등록(안 제15조 및 별지3)**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
- 군산시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해외연수자료실에 등록

**사.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 등(안 제16조)**

- 공무국외여행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활용토록 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운영

**아. 동 규칙의 제정으로 「군산시공무국외여행규정」은 폐지**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8월 16일

군산시 규칙 제515호

###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전부개정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대 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라 함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시행한 상수도 시공 기 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배관관 련 기능사2급이상(유체기계기술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기능사2급, 공업배관 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 술자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이 지정한 자로서 전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 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행업소라 함은 전항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4. 시공업 이라 함은 대행업자가 행하는 급수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관내 영업장 소재지를 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전문공사 면허를 보유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대행업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대행업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영업용자본명세표
5.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6. 공사용장비기구소유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7. 영업소 건축물이 타인소유일 경우 임대계약서 사본
8. 상하수도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제4조(지정기준 및 제한)

1. 대행업의 지정 기준은 별표 1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장이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군산시 관내 급수전 매 4,000전마다 1개대행업소를 둔다. 다만, 신설지구로써 공사신청이 일시에 접수되는 경우 및 이 기준에 초과되는 전수가 2,000전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공시한 지정요건을 갖춘 신청업체수가 모집업체수를 초과 지정신청 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대행업자로서 년2회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군산시(이하 “시”라한다)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 제6조(지정기간)

1.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시장은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지정 할 수 있다.

#### 제7조(지정서 교부)

1. 시장은 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에 따른 대행업체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금 예치)

1.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증금 10,000,000원을 현금 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가. 은행의 지급보증서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상장 유가증권

다.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이상의 정액 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한다.

2. 대행업자가 시공한 흠이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시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수케하고 전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 배상금 총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4. 보증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기간은 공사의 크고 작음을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제2호 서식의 표지를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및 재시공 명령)

1. 시장은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2. 전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시공기술자의 배치)

1.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

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

가. 군산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나. 제5조제1호에서 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3. 급수공사 현장에는 수도사업소장이 발행한 시공승인한 사항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업자에 대한 조사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에 대한 자산 기재 시공상황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1.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

나.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다.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라.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마.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별지제7호서식)

2. 전항 제2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서 수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 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회 1개월, 2회 2개월, 3회6개월의 대행업을 정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서 시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2. 이 규칙에 정한 제신고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제16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

3.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제8조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대행업자 지정후 주된 영업사무소를 군산시 관외로 이전하였을 때

7. 지정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제17조(인가 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 효력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있다.

제18조(보수책임)

1.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자격취소) 시장은 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

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얻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공하였을 때

제20조(청문) 제16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칙 시행 당시에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이규칙에 의한 시공기술자로 본다.
2. 이 규칙 시행 당시에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영업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행업의 유효 지정기간은 만료기간까지 이 규칙에 의한 대행업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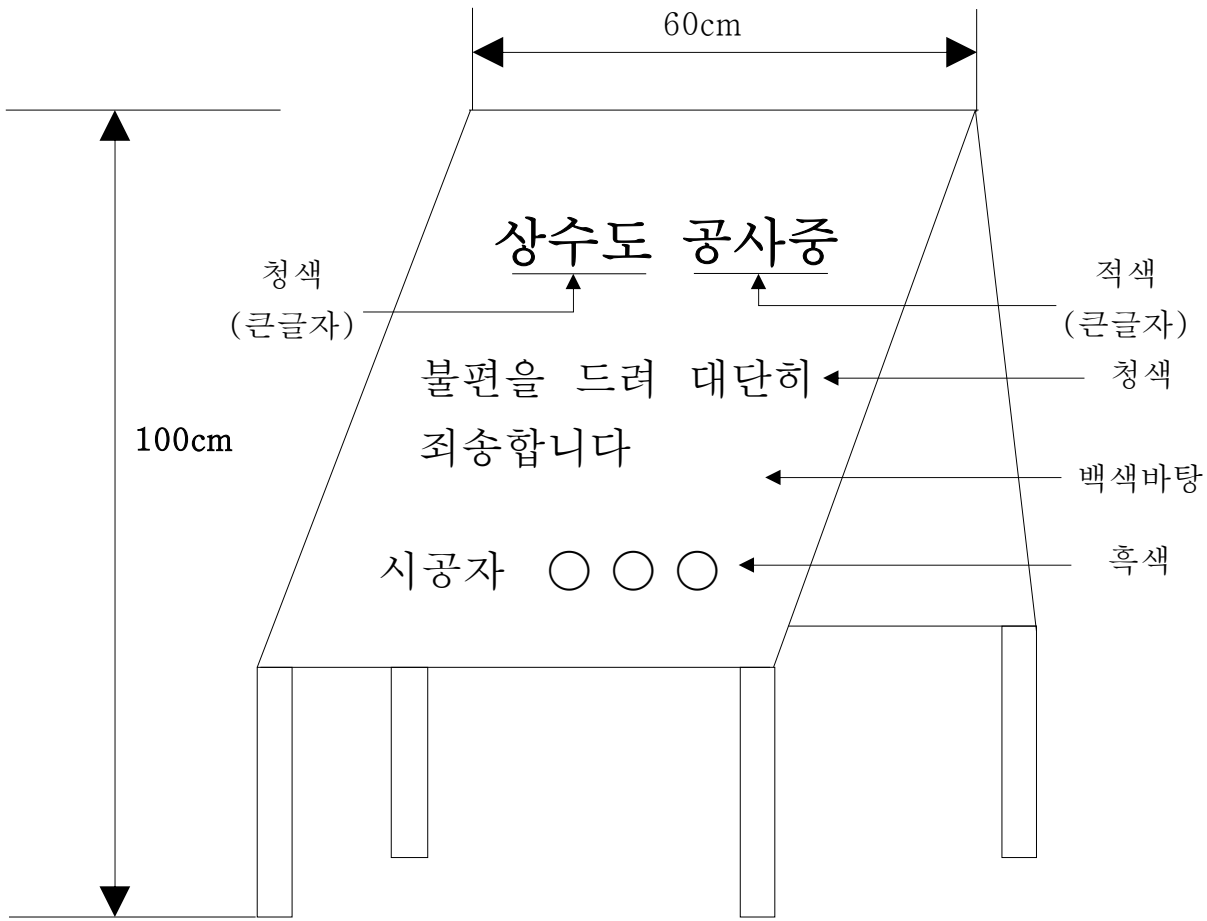
[별표 1] 급수공사대행업지정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법 인	비 고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2인이상 확보	
자본금	-불입자본금 20,000,000원이상	
보유장비	-소형브레이카 2.7m <sup>3</sup> /분 이상 1대이상 -양수기펌프 40mm 2대이상 -발전기 5Kw 1대이상 -고속절단기 1대이상 -PE 및 PVC관 카타기 1대이상 -람마 80Kg 1대이상 -컴팩트 1대이상 -포장절단기 1대이상 -작업차량 1.0톤이상 1대이상 -굴삭기 0.1m <sup>3</sup> 이상 1대이상 -새들천공기 13~50mm 각1개이상	
기타사항	1. 영업소 또는 사무실 20m <sup>2</sup> 이상 2. 통신장비 -전용전화 1대이상 -휴대전화 1대이상 3. 안전헬스 10개이상 4. 라바콘(원뿔형) 야광 20개이상 5. 공사안내간판 -소형 2개이상 -대형 1개이상 6. 야간 경광등 2개이상 7. 해빙기 1대이상	

※ 시공기술자 인정 조건(선택)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2급이상 자격취득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자  
 - 기존 군산시 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취득자

[별표 2]

### 공사안내판(안)





[별지2호서식]

### 종업원 신고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고용월일	시공기술 자 격	실무경력	비 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고용하였기에 관계서류를 붙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재지 :

상 호 :

대행업자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장 비·기 구 명 세 서

기 구 명	규 격	기본수량	용도	보유량	비 고
- 소형브레이카		1대	포장파쇄		2.7m³/분
- 양수기펌프		2대	양수작업		40mm
- 발 전 기		1조	전기공구사용		5KW
- 고속절단기		1대	강관절단		
- PE및PVC관카타기		1대	PE및PVC관절단		80kg
- 램 마		1대	다짐기		
- 콤팩트		1대	다짐기		
- 포장절단기		1대	포장절단		
- 작업차량		1대	운반		
- 굴삭기		1대	굴착 및 운반		
- 새들천공기	15~50mm	1조	원관천공		
- 안전헬스		10개	공사현장설치		
- 라바콘(원뿔형)		20개	“		
- 공사안내판		3조	“		
- 야간경광등		2개	“		
- 해빙기		1대	결빙관 해빙		

「군산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용  
공구·기구 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4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급수공사대행업지정서

성 명 :

법인등록번호 :

영 업 장 소 :

상 호 :

「군산시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제6조에 따라 군산시 급수공사  
대행업을 지정합니다.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인

【신고사항】

신고년월일	구 분	신고내용	처 리 담당자인	확 인



[별지 6호서식](전면)

## 급수공사대행업체카드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소	지정년월일	지정번호	상 호	
	한자	법인등록번호							
사 진	재 산		사 무 실		전 화	영업장소제지		기능공수	
	대지	㎡	원	자 가	차 가				
	건물	㎡	원						
	평가액		원	면적		㎡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소 재 지 변 경				
소형브레이카					주소	변경년월일	신고년월일	확인	비 고
양기기펌프									
발전기									
고속절단기									
PE및PVC관카타기					휴 폐 업 신 고				
람마					휴폐업기간	사 유	신고년월일	확인	비 고
콤팩트									
포장절단기									
작업차량					대 행 업 위 반 처 분				
굴삭기					처분일자	처분사유	정지기간	확인	비 고
새틀천공기									
해빙기									

[별지 6호서식](후면)

# 현 장 대 리 인

성 명	자격번호	취업년월일	확인	해고연월일	확인	성명	자격번호	취업년월일	확인	해고일자	확인

297mm×210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영업규칙 전부개정

### 1. 제안이유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영업규칙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관내 상하수도설비전문공사 면허소지자가 대행업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 개선 (안 제3조 )

나. 대행업 지정기간 만료시 지정기간 연장조항 삭제

다. 대행업 지정기준 개정 (안 제4조 별표1)

1) 지정기준을 현장처리 능력에 맞도록 장비 및 기준 보완

(안 제4조 별표1)

2) 기계화시공에 따른 시공능력 향상으로 업소당 수전수 조정

(안 제4조 제2항)

3) 신청업체수가 모집업체수를 초과 지정신청 할 경우 공개추첨하여 지정할수 있는 항목 신설(안 제4조 제3항)

라. 대행업 결격사유에 군산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추가

(안 제5조 제5항)

마. 지정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변경(안 제6조제1항)

바. 지정교부시 교부대장 및 대행업체카드 관리 양식 추가(안 별지제5호, 별지제6호)

사. 보증금 예치금액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8조 제1항)

아. 군산시장의 시공기술자 시험제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

술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제도개선

(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자. 기타 별표, 별지 양식 변경

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군산시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영업규칙 전부개정“안” : 붙임

2) 입법예고(2012. 6. 15. ~ 2012. 7. 10) 결과 : 미반영

○ 의견수렴 내용(제출자 군산시 상수도대행업체)

- 건의사항 : 입법취지 및 변호사 자문결과 특혜우려로 미반영

1) 대행업체 최종만료되는 업체와 동일하게 지정기간 연장요망

2) 기존업체 생계유지를 위한 영업보상 방안 강구

3) 새로운 대행업체 선정시 기존 대행업체의 재지정 받을수 있는 특별대책 요구

3) 규제심사 : (심사전)

4) 권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지시공문 사본

군산시 공고 제2012-1658호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16일

## 군 산 시 장

###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의 일반적 내실화를 다지고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도모

####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 방식과 사무 배분의 적정성을 고려  
 ↘ 위원장의 직위를 시장에 부시장으로 조정

나. 위촉직 위원 위촉 관련(안 제2조)

- 위촉직 위원 구성 인원 구체화 신설 (7인 이내)
- 의결사항 일부만 위촉직 위원 참여 규정 삭제  
     ↳ 의결사항 전항목에 대해 위촉직 위원 참여 여지 확대
- 위촉직 위원 해촉 시기 등 명확화

다. 위원장의 표결권 등 관련(안 제4조)

- 위원장의 표결권 명문 규정 신설
- 심의 의결 규정 강화 신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

라. 간사와 서기 관련(안 제6조)

- 간사의 직위 변경 (기획예산과장⇒기획업무담당주사)
- 서기 임명 관련 규정 신설( 기획예산과 소속 직원으로 임명)

###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5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전화 450-6101, 팩스 452-815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 (전화 450-6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조례 제 호

##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를 “결정을 하기”로,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30인 이내의 위촉직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 개최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자문, 심의, 연구, 결정)”을“(결정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를 “사항을”로 한다.

제4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간사)”를“(간사와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중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u>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u> <u>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1조(목적) ----- ----- ----- ----- <u>결정을 하기</u> --- ----- <u>시정조정위원회</u>----- -.</p>
<p>제2조(구성) ①<u>위원회는</u>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u>30인 이내의 위촉직위원</u>으로 구성한다.</p>	<p>제2조(구성) ①<u>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 ----- <u>위촉직 위원</u>----- -----.</p>
<p>②<u>위원장은</u>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u></p>	<p>②<u>위원장은</u>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자치행정국장이 되며</u>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u></p>
<p>③ (생략) <u>&lt;신설&gt;</u></p>	<p>③ (현행과 같음) ④<u>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 개최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u></p>
<p>제2조의2(임기) ① <u>위촉직 위원의 임</u></p>	<p><u>&lt;삭제&gt;</u></p>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다시 위촉하여야 하며,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자문, 심의, 연구, 결정)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결정한다.

- 1. ~ 5. (생략)

제4조(회의) ① ~ ④ (생략)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후단 신설>

⑥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며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 ⑦ (생략)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3조(결정사항) ----- 사항을 -----.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삭제>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와서기)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신 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  
----- 군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군산시 고시 제2012-93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관련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된 관련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16. ~ 8. 30.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34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6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13건

종전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람				

○ 관련지번 변경 : 29건

도로명주소	변경된 지번주소	종전 지번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NO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 일	도로명주소고 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산119-5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 면 개정안길 226	20090508	20110816	운회,아산,발산,통사리를 지나 는도로
2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579-10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 면 개정문화길 33-12	20070528	20110816	통사리 문화 마을 소재
3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530-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 송안2길 8	20120210	20110816	행정동명으로 서수식,방향성으 로 도로명 부여
4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1536-5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 송안1길 12-1	20100125	20110816	행정동명으로 서수식,방향성으 로 도로명 부여
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313-1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 대로 374	20100125	20110816	군산시산업단지를 지나는 도로
6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126-1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 면 망해산로 89-6	20120808	20110816	망해로의 어감이 좋지 않고 망 해산에서 인용
7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528-1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 면 진장1길 43-13	20100125	20110816	부곡리 진장 마을소재
8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주곡리 1132-5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 면 뜰아름길 13	20111209	20110816	뜰아름 마을 명칭 인용
9	전라북도 군산시 동홍남동 405-39	전라북도 군산시 팔마 로 196-6	20100125	20110816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0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445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 로 511	20100125	20110816	군산대학교를 지나는 도로
11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846-2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 6길 39	20100125	20110816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2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동 379	전라북도군산시풍남길 48	20100125	20110816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3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동 379	전라북도 군산시 풍남 길 46	20100125	20110816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4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동 379	전라북도 군산시 풍마 길 11	20100125	20110816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5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6-8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 금북로 43	20100125	20110816	새만금 북쪽에 위치한 도로

16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8-9	전라북도 군산시 변영로 342-39	20100125	20110816	변영로 고유명칭을 반영
17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1518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95	20100125	20110816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18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 305-4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상 금길 3	20100125	20120803	금암리 상금 마을 소재
19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2102-1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 수문화길 22-1	20100125	20110816	서수리 문화마을 소재
20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화동리 1092-1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청 룡로 229-134	20100125	20110816	상장곤 북쪽에 청룡산 위치, 102번 면도로 산이름 인용
21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792-6	전라북도 군산시 남수송5 길 8-7	20100125	20110816	수송택지 개발지역
22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42-2	전라북도 군산시 동수송4 길 3	20100125	20110816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23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882-2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안10 길 7	20100125	20110816	서수식 도로구간설정
24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941-1	전라북도 군산시 서해대길 27	20100125	20110816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5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96-5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 로 220	20100125	20120806	군장산업단지의 남북를 통한하는 중심도로로 지역명칭 및 방향성에 서 인용
26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00-11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4길 36-7	20100125	20110816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27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14-13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길 37-28	20100125	20110816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8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28-13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안1 길 30-7	20100125	20110816	지명으로 서수식,방향성 도로명 부 여
29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629-17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안2 길 23-4	20100125	20110816	지명으로 서수식,방향성 도로명 부 여
30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71-30	전라북도 군산시 증가도길 55	20100125	20110816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31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37-13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20	20100125	20110816	행정동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32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508-4	전라북도 군산시 상지곡3길 17-8	20100125	20110816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33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508-5	전라북도 군산시 상지곡3길 17-6	20100125	20110816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34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201-4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949	20100125	20110816	새만금 발전에 대비한 남군산의 대동맥 도로를 의미	
NO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07-6	전라북도 군산시 상나운로 5	전라북도 군산시 상나운3길 19	20100125	20110816	나운동의 윗쪽에 위치
2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동 824-7	전라북도 군산시 석치2길 14	전라북도 군산시 군중길 23-6	20100125	20120808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3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화등리 955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화등길 79-38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화등길 79-40	20100125	20110816	화등리의 중심도로 역할
4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남동 826-3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안길 128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안길 132-2	20100125	20120813	행정동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5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46-3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7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9-1	20090508	20110816	섬이름에 서수번호 사용
6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6-1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20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22-2	20100125	20110729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NO	종전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 일	도로명주소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6-10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9	20100125	20110729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2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6-12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488	20100125	20110729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여
3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6-15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8	20100125	20110729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4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6-17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12	20100125	20110729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5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6-18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12-1	20100125	20110729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6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6-2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22-4	20100125	20110729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7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6-20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14	20100125	20110729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8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6-22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18	20100125	20110729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9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6-3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22-8	20100125	20110729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0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6-4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21-3	20100125	20110729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1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6-6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17	20100125	20110729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2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16-7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15	20100125	20110729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13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217-1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신타매길 29-4	20100125	20110729	옛지명에서 인용

NO	도로명주소	변경된 지번주소	종전 지번주소	도로명고 시일	도로명주소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1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대야관통로 44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699-120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699-243, 699-136	2010012 5	2011072 9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2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대야관통로 46-4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699-123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699-123, 699-17	2010012 5	2011072 9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3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대야관통로 40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699-140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699-25	2010012 5	2011072 9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4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대야관통로 42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699-243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699-140, 699-137	2010012 5	2011072 9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5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만자로 81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895-6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908-1	2010012 5	2011072 9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6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만자로 85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912-10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908-1	2010012 5	2011072 9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7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만자로 77-6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912-16, 912-4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912-30	2010012 5	2011120 1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8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만자로 81-2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912-19, 912-6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912-6	2010012 5	2011120 1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9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만자로 79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912-26, 895-4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912-6, 895-4	2010012 5	2011121 4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0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77-4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지경리 912-28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 면 지경리 912-26	2010012 5	20111201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1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77-3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지경리 912-30, 912-1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 면 지경리 895-1	2010012 5	20110729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2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만자로 83	전라북도 군산시 대 야면 지경리 912-9, 895-9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 면 지경리 908-1	2010012 5	20110729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3	전라북도 군산시 풍문안1길 36	전라북도 군산시 미 원동 378, 377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 동 377	2010012 5	20110729	지명으로 서수식, 방향 성 도로명 부여
14	전라북도 군산시 화흥길 80	전라북도 군산시 산 북동 1748-1, 1748-7, 1748-4, 1748-3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 동 1748-1, 1748-4, 1748-3	2010012 5	20110729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5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상금길 5	전라북도 군산시 서 수면 금암리 306-1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 면 금암리 306-1, 305-4	2010012 5	20110729	금암리 상금 마을 소 재
16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신구2길 15-8	전라북도 군산시 서 수면 화동리 487-1, 486-1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 면 화동리 487-1	2010012 5	20110729	화동리 신구 마을소재
17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길 46-9	전라북도 군산시 신 풍동 987-79, 987-57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 동 987-79	2010012 5	20110729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8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길 46-11	전라북도 군산시 신 풍동 987-83	전라북도 군산시 신평 동 987-83, 987-57	2010012 5	20110729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19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1길 60	전라북도 군산시 오 룡동 834-39, 834-38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 동 834-38	2010012 5	20110729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 명 부여
20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전라북도 군산시 오 식도동 0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 도동 1010	2010012 5	20110729	새만금 북쪽에 위치한 도로
21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20	전라북도 군산시 월 명동 16-1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 동 16-23	2010012 5	20110816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 명 부여
22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490	전라북도 군산시 월 명동 16-13, 16-12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 동 16-13	2010012 5	20110816	지명을 도로명으로 부 여
23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10	전라북도 군산시 월 명동 16-15, 16-17, 16-16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 동 16-16	2010012 5	20110816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 명 부여
24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16	전라북도 군산시 월 명동 16-18, 16-19, 16-23, 16-21, 16-22, 16-20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 동 16-21	2010012 5	20110816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 명 부여
25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19	전라북도 군산시 월 명동 16-2, 16-5, 16-4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 동 16-5	2010012 5	20110816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 명 부여
26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13	전라북도 군산시 월 명동 16-7, 16-6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 동 16-8	2010012 5	20110816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 명 부여
27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11	전라북도 군산시 월 명동 16-8, 16-10, 16-9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 동 16-9	2010012 5	20110816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 명 부여
28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1길 17-4	전라북도 군산시 월 명동 28-7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 동 28-6	2010012 5	20110729	행정동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29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신태매길 29-3	전라북도 군산시 임 피면 술산리 217-2, 218-5, 217-3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 면 술산리 217-2	2010012 5	20111114	옛지명에서 인용

군산시 고시 제2012-94호

##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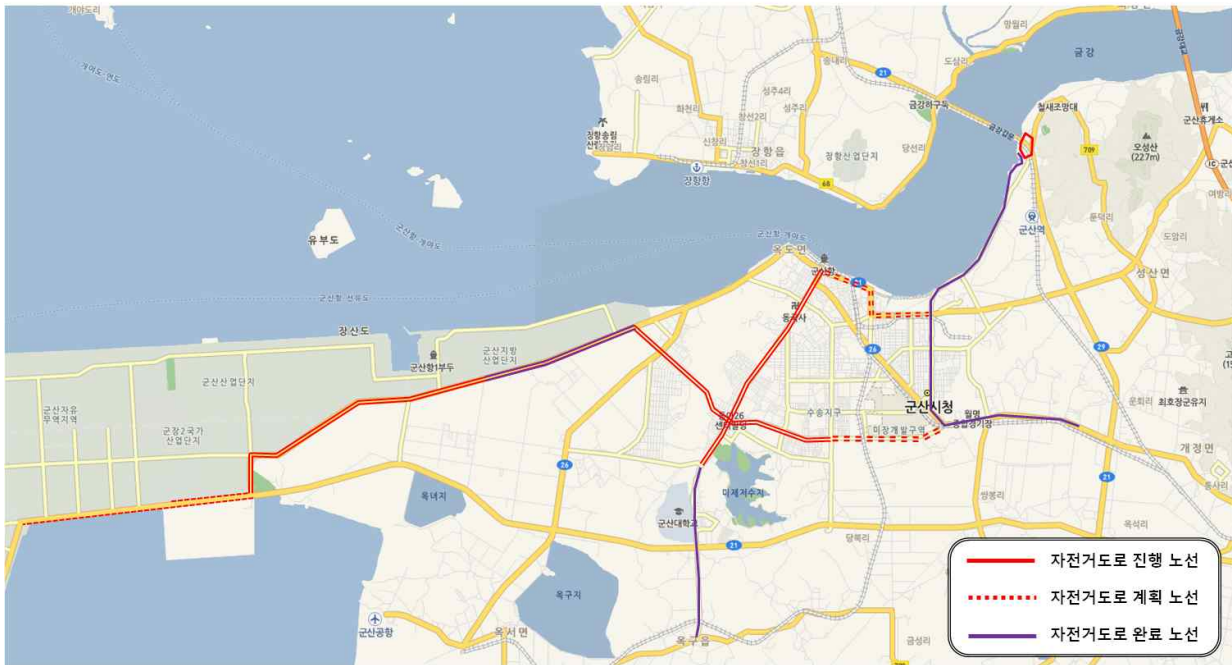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8월

군산시장

	노 선 명	노선번호	자전거도로 종류	도로 관리청	도 로 구 간		총연장 (km)	자전거 도로 너비(m)	주요경유지	지정사유
					시 점	종 점				
완 료	대 학 로	시도 (315-5도)	자전거전용도로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입구 (1223-4유)	육구읍 소재지 (98-7대)	1.6	2~4	군산대학교	- 자 전 거 도로 진 행 상 황 과 약
			자전거전용차로				0.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7			
	변 영 로	562도	자전거전용도로	군산시	군산중초등학교 (757-1학)	개정파출소 (248-2대)	1.6	2~4	월명체육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1			
	조촌로/강 변로	시도 (대로1-4)	자전거전용도로	군산시	동초교사거리 (757-1학)	금강하구둑 (487-19잡)	3.54	1.5~2.4	동군산병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94				3.5~4			
의 항 로	국도21호선	자전거전용도로	군산시	공단삼거리	한국유리삼거리	3.2	2.4	동양제철화학		
진 행	산업단지	국도21호선	자전거전용도로	군산시	한국유리(64-4)	세아베스틸	3	2.4	-	- 자 전 거 도로 내 불 법주차 및 차 량 통 행 단 속
	엑스포삼거리	국도21호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군산시	세아베스틸 (1-13잡)	엑스포삼거리 (814-1주)	3	3(1.5)	-	
	공단대로	136-6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군산시	지곡동신아파트 (904대)	소룡사거리 (694잡)	4.7	5~5.3 (1.5)	구)보건소 사거리	
	대 학 로	874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군산시	내항사거리 (24-5)	은파호수공원 (1223-4유)	4.4	4.5(1.5)	차 병 원	
	금강연결로	487-15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군산시	금강호 휴게소(487-19잡)		1.1	2.4	금강호휴게소	
계 획	연안사거리	274-21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군산시	연안사거리 (590-310주)	내항사거리 (24-5)	2.8	-	이 마 트	
	새만금복로	1008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군산시	엑스포삼거리 (814-1주)	비응항 (36-7잡)	6.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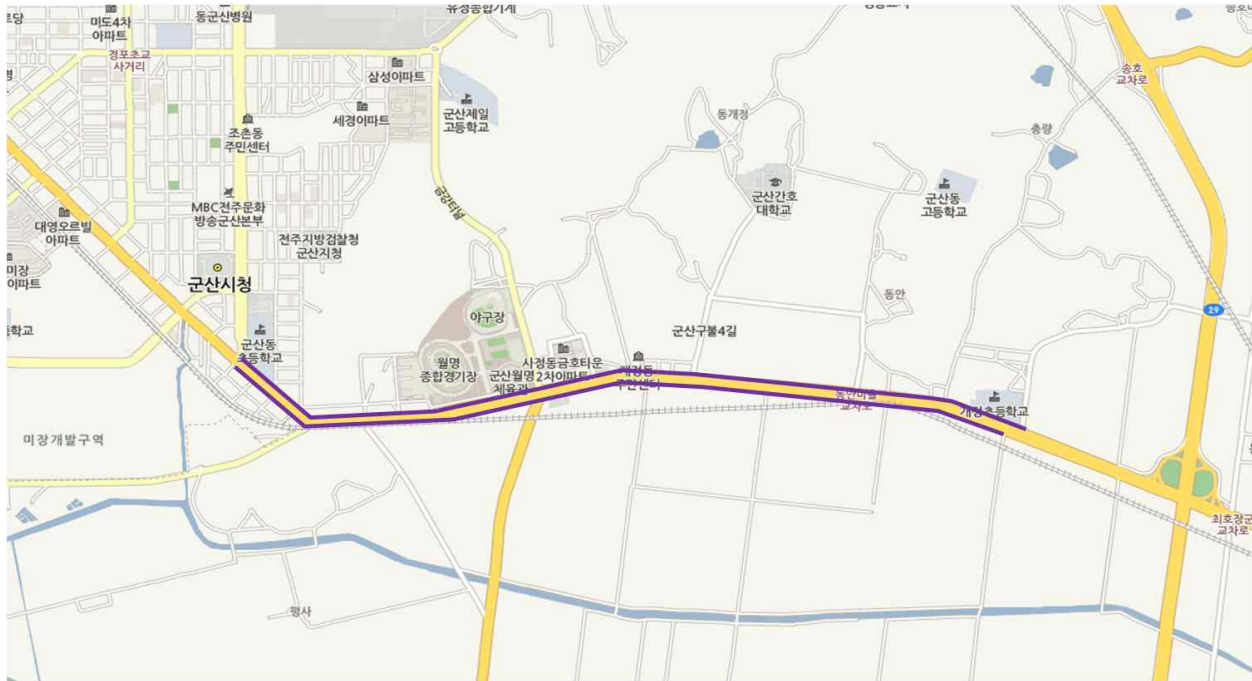
# 군산시 자전거도로 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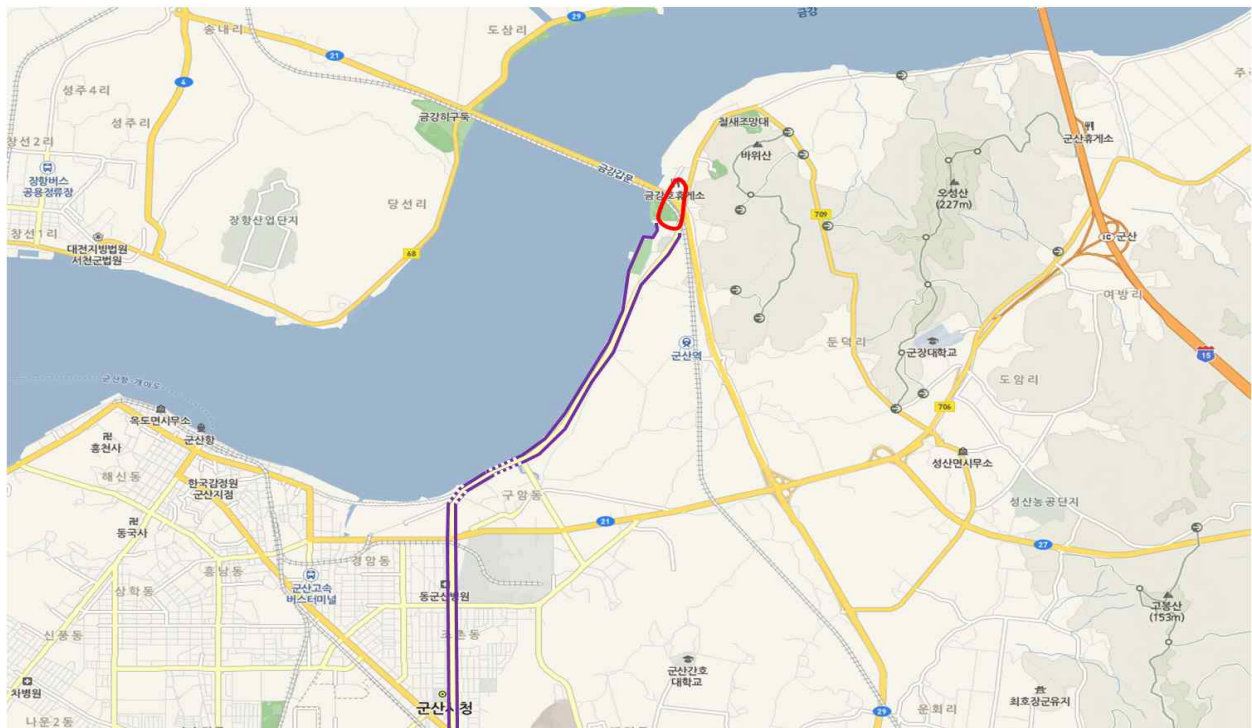
## 대학로 자전거도로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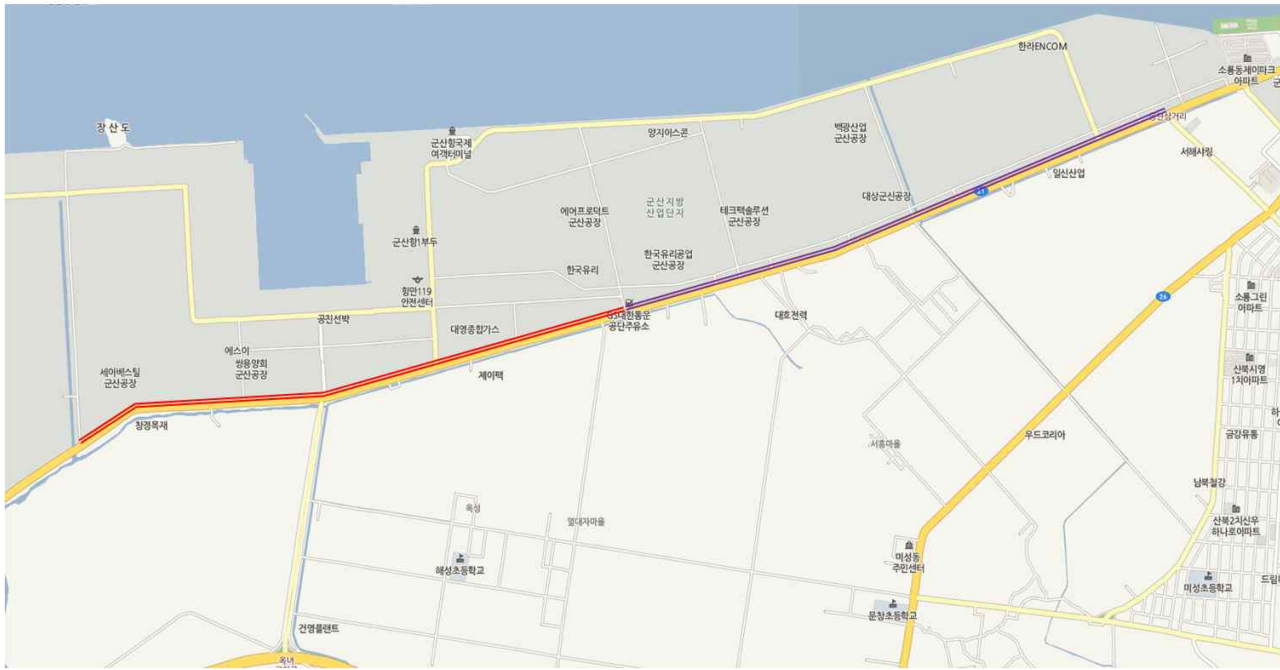
### 변영로 자전거도로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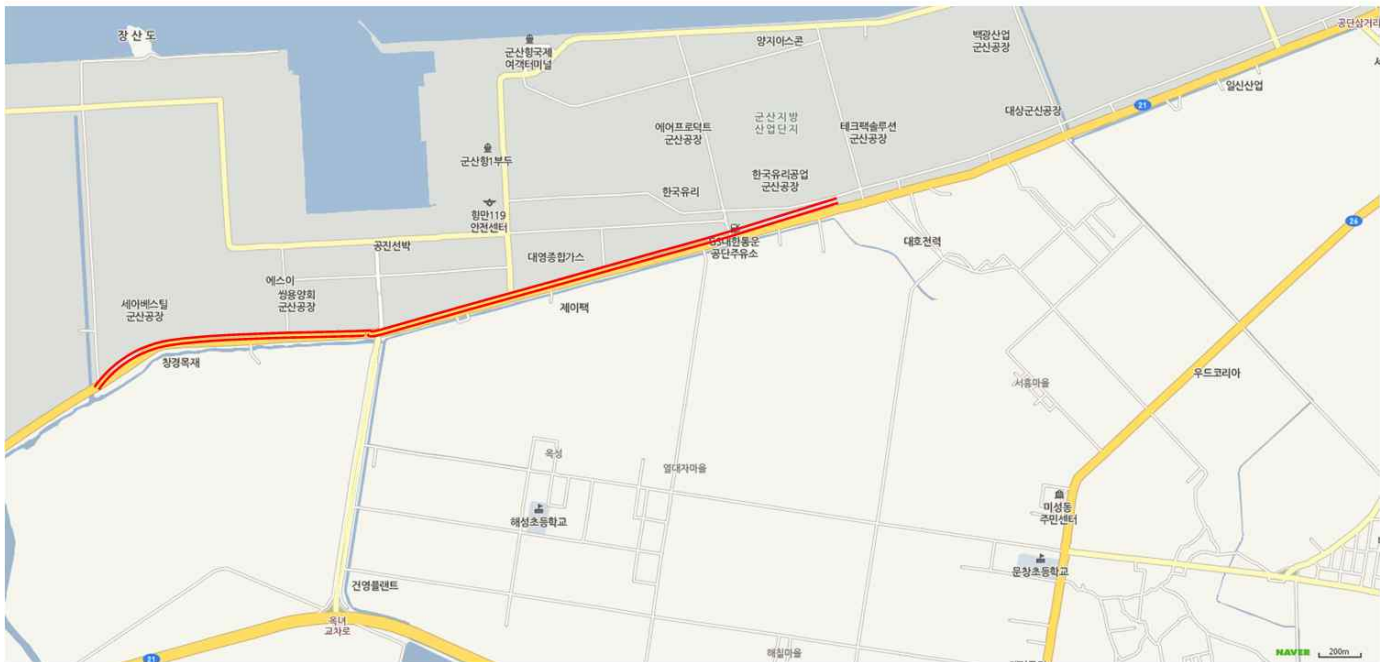
### 조촌로 · 강변로 자전거도로 노선도



# 외항로 · 산업도로 자전거도로 노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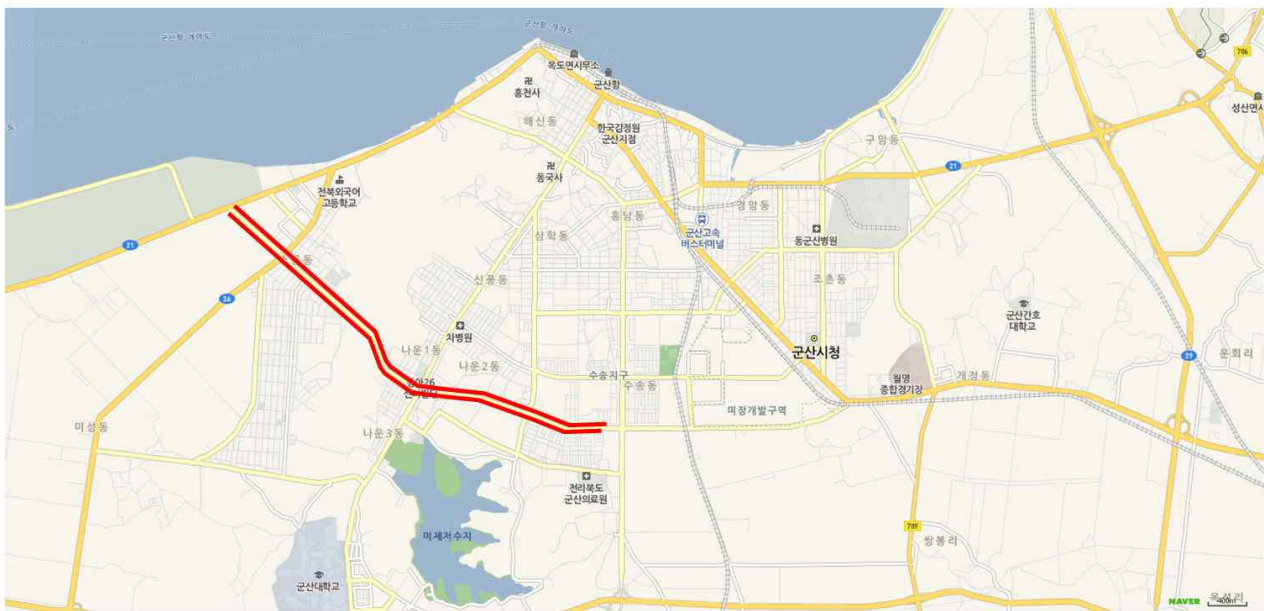
# 산업도로 자전거도로 노선도



### 엑스포삼거리 자전거도로 노선도



### 공단대로 자전거도로 노선도



### 대학로 자전거도로 노선도



### 금강자전거길 연결로 자전거도로 노선도





군산시 공고 제2012-1608호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안)

201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1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개별주택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랐

- 기 간 : 2012년 8월 3일 - 8월 23일
- 장 소 : 군산시 세무과(과표계)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 2012년 1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대상임

### ○ 의견제출

- 기 간 : 2012년 8월 3일 - 8월 23일
- 제출사항 :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대비 가격변동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군산시 세무과(과표계)
- 제출방법 : 군산시 세무과(과표계)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 450-4290, 6155)로 문의바랍니다.

#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12-1617호

## 시야지위험도로(지방도706호선)개선공사 보상계획 공고

전라북도지사가 시행하는 시야지위험도로(지방도706호선)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2. 08. 02

군 산 시 장

### 1. 사업개요

- ▶ 사업명 : 시야지위험도로(지방도706호선)개선공사
- ▶ 위치 :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 나포면 서포리 일원
- ▶ 사업량 : 선형개량 L = 1.0 km, B = 9.5 m
- ▶ 사업기간 : 2012. 1 ~ 2013. 12
- ▶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사

### 2. 보상대상

- ▶ 시야지위험도로(지방도706호선)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권리일체
- ▶ 토지조서 : 붙임과 같음

### 3. 토지조서 : 전라북도 군산시청 건설과(063-450-4487)

### 4. 열람 및 이의신청

- ▶ 대상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에 토지물건의 조서를 열람 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청 건설과로 이의 제기 할수 있음

▶ 편입토지등의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으로 인하여 개별통지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 열람기간 : 2012. 8. 2 ~ 2012. 8. 16(15일간)
- ▶ 열람 및 이의 제출 장소 :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계획계 (063-450-4487)

### 5. 보상시기 : 2012. 8월중 개별통보

###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며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보상

▶ 본 공고이후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요청하는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을 지급하며 협의가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토지

수용법에 의한 소정절차에 따라 보상을 추진함.

7. 사업시기 및 보상은 추진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산시청

건설과 도로계획계(063-450-448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8. 편입토지 물건조서

위 치	지 번
성산면 여방리	288-3, 296-2, 296-1, 283-3, 283-2, 282-2, 282-1, 277-2, 278-1, 277-1, 230-1, 288-2, 286-3, 286-1, 296-3, 282-5, 286-16, 286-13, 288-8, 295-2, 296-6, 736-3, 737-4, 737-5, 738-3, 738-4, 739-3, 740-3, 741-2, 742-1, 742-2, 743-1, 744-1, 745-1 (34필지)
나포면 서포리	251-2, 216-4, 219-5, 275-1, 273-1, 216-3, 216-2, 215-1, 215-2, 214-1, 614-14, 614-15, 614-16, 614-17, 615-16, 616-17, 615-18, 615-19, 615-20, 615-21, 615-22, 616-19, 142-5, 143-3, (24필지)

군산시 공고 제2012-1619 호

# 보 상 계 획 (군산시공고 제2012-1617호) 재 공 고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시행하는 “시야지위험도로(지방도706호선)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

께서는 보상협의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 : 전라북도지사(도로관리사업소)

2. 사업의종류 및 편입토지 등의 내역

공 사 명	사 업 의 위 치	편 입 토 지	편입면적	사 업 량
시야지위험도로 개선공사(지방도706호)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성산면 여방리 288-8 등57필지	11,291㎡	선형개량 L=1.0km, B=9.5m

3. 보상의 시기 : 공고만료후 토지조서등 이의가 없을시 감정평가 후 별도 통보 예정

4. 보상의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 토지 및 지장물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따라 2인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

으로 결정하여 현금보상

▶ 본 공고이후 대상물건의 소유자등에게 요청하는 손실보상협의를 성립되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 소유권 이전후 보상금을 지급하며 협의가 불성립되는 경우

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소정절차에 따라 보상을 추진함.

5. 토지조서 열람장소 및 이의신청 : 군산시청 건설과 도로계획계(☎ 063-450-4487)

▶ 대상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에 토지물건의 조서를 열람

하시고 이의가 있을때에는 군산시청 건설과로 이의제기 할수 있으며

▶ 대상물건에 대하여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6.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 신문게시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기타사항

▶ 보상액 및 구비서류등 보상에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  
 리며

지장물은 향후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여 확정할 것입니다

▶ 본번지에서 편입분할된 토지조서는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문 열람  
 주소검색 : <http://www.gunsan.go.kr>

7. 지번별 편입토지 조서

위 치	지 번
성산면 여방리	288-3, 296-2, 296-1, 283-3, 283-2, 282-2, 282-1, 277-2, 278-1, 277-1, 230-1, 288-2, 286-3, 286-1, 296-3, 282-5, 286-16, 286-13, 288-8, 295-2, 296-6, 614-14, 614-15, 614-16, 614-17, 736-3, 737-4, 737-5, 738-3, 738-4, 739-3, 740-3, 741-2, 742-1, 742-2, 743-1, 744-1, 745-1 (38필지)
나포면 서포리	251-2, 216-4, 219-5, 275-1, 273-1, 216-3, 216-2, 215-1, 215-2, 214-1, 615-16, 616-17, 615-18, 615-19, 615-20, 615-21, 615-22, 616-19, 142-5, 143-3, (20필지)

2012년 8 월 6 일

군 산 시 장

연번	토지 소재지					지적 면적	분할후 지 변	편입 면적	토지대장소유자		이해관계인
	시	면	리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1	군산	성산	여방	288-3	도	301	전필지	301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312	김영호	
2	"	"	"	288-1	전	999	288-8	6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446-1	김완옥	
3	"	"	"	295	전	3,042	295-2	70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456	김동진	
4	"	"	"	296-2	도	102	전필지	102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565	정명옥	
5	"	"	"	296-4	답	3,385	296-6	108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334	황득룡	
6	"	"	"	296-1	도	33	전필지	33	익산군 남이면 연화리	김종수	미등기
7	"	"	"	283-3	도	532	전필지	532	충남 홍성군 고남하도면 상촌리	김병원	미등기
8	"	"	"	283-2	도	23	전필지	23	충남 홍성군 고남하도면 상촌리	김병원	미등기
9	"	"	"	282-2	도	195	전필지	195	군산부 소화동 2정목 15-1	서포중광	
10	"	"	"	282-1	도	119	전필지	119	군산부 소화동 2정목 15-1	서포중광	
11	"	"	"	282-3	답	3,419	282-5	72	군산시수송동33-1제일임대아파트 101동807호	한명래 외1인	
12	"	"	"	277-2	도	446	전필지	446	충남 홍성군 고남하도면 상촌리	김병원	미등기
13	"	"	"	278-1	도	93	전필지	93	군산시 군내면 동상리	이병관	미등기
14	"	"	"	742	답	925	742-1	563	군산시 성산리 여방리 328	고평근	
15							742-2	36	"	고평근	
16	"	"	"	736	답	944	736-3	116	군산시 경암동 639-14	김미자	
17	"	"	"	737	답	2,156	737-4	996	군산시 나운동 793-1 한신@107/406	이영숙	
18							737-5	261	"	이영숙	
19	"	"	"	738	답	1,121	738-3	532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172	장왕래 외4인	
20							738-4	510	"	장왕래외4인	
21	"	"	"	277-1	도	595	전필지	595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448	김호겸	
22	"	"	"	614-3	답	121	614-14	47	군산시나운동156-2 신일아파트102동1003호	임미현	
23	"	"	"	614-12	답	2,291	614-17	6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321	김정취	미등기
24	"	"	"	614-4	답	3,655	614-15	307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331	김병원	미등기
25	"	"	"	614-5	답	1,425	614-16	147	군산시백토로93.1동203호 (문화동삼성아파트)	박정자	
26	"	"	"	230-1	도	281	전필지	281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448	김호겸	
27	"	"	"	288-2	도	73	전필지	73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244	김순필	미등기
28	"	"	"	286-3	도	10	전필지	10	임실군 임실면 성가리 281	박경수	서초세무서외4
29	"	"	"	286-4	답	1,242	286-13	36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0-64	김동균	
30	"	"	"	286-1	도	26	전필지	26	임실군 임실면 성가리 281	박경수	서초세무서외4
31	"	"	"	286-2	답	600	286-12	13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331	김재풍	
32	"	"	"	296-3	도	50	전필지	50	익산시 남이면 연화리	김종수	미등기
33	"	"	"	743	답	1,050	743-1	332	성산면 여방리 332-1	김대기	
34	"	"	"	744	답	450	744-1	75	성산면 여방리 332-1	김대기	
35	"	"	"	745	답	1,700	745-1	52	성산면 여방리 332-1	김대기	

36	"	"	"	739	답	955	739-3	380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28	김명국	
37	"	"	"	740	답	2,047	740-3	471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28	김명국	
38	"	"	"	741	답	2,071	741-2	210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28	김명국	
39	군산	나포	서포	615-1	답	3,210	615-16	40	군산시지곡동158-1은파코아루아파트 106동1303호	문인구	
40	"	"	"	251-2	도	172	전필지	172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446	김병호	
41	"	"	"	615-2	답	1,249	615-17	27	군산시지곡동158-1은파코아루아파트 106동1303호	문인구	
42	"	"	"	615-3	답	2,488	615-18	58	군산시 지곡동 409	최준영	한국농어촌공사 군산농협협동조합
43	"	"	"	615-4	답	2,147	615-19	52	군산시 지곡동 409	최준영	"
44	"	"	"	615-5	답	777	615-20	58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447	김홍호	
45	"	"	"	615-6	답	1,098	615-21	63	군산시 문화동 879-12	최미옥	
46	"	"	"	615-7	답	2,573	615-22	364	군산시 문화동 879-12	최미옥	
47	"	"	"	216-4	도	53	전필지	53	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626-3 용소마을제일아파트102동504호	박국자	
48	"	"	"	616-15	답	2,600	616-19	286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132-2	김길례	
49	"	"	"	219-5	전	89	전필지	89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132-2	김길례	
50	"	"	"	143	묘	38	143-3	13	서울시서초구방배동818-23 302호	김맹희	
51	"	"	"	142-1	전	401	142-5	37	"	김맹희	
52	"	"	"	275-1	도	208	전필지	208	군산시 대야면 북교리 515	장학봉	
53	"	"	"	273-1	도	426	전필지	426	하북면 신성리	김동배	
54	"	"	"	216-3	도	155	전필지	155	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626-3 용소마을제일아파트102동504호	박국자	
55	"	"	"	216-2	도	813	전필지	813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영당리 448	최육영	
56	"	"	"	215-1	도	66	전필지	66	경성부 간동 78번지	박용만	
57	"	"	"	215-2	도	50	전필지	50	경성부 간동 78번지	박용만	
58	"	"	"	214-1	도	36	전필지	36	임피면 읍내리 453	이완식	
합 계								11,291			

## 2012/2013년도 어업면허 처분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2-1641호

2012/2013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7

### 군 산 시 장

#### ○ 어업면허 처분 사항

어업의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면적	면허기간	어장위치	면허처분일	어업권자
마을어업	-	5265	18	2012. 8. 6 ~ 2015. 8. 5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해역	2012.8.6	비안도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해조류양식	부류식	5598	200	2012. 8. 6 ~ 2015. 8. 5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해역	2012.8.6	비안도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해조류양식	부류식	5599	50	2012. 8. 6 ~ 2015. 8. 5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해역	2012.8.6	비안도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해조류양식	부류식	5600	50	2012. 8. 6 ~ 2015. 8. 5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해역	2012.8.6	비안도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해조류양식	부류식	5601	100	2012. 8. 6 ~ 2015. 8. 5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해역	2012.8.6	비안도 어촌계 대표 어촌계장

## 2012/2013년도 어업면허 처분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2-1646호

2012/2013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7

## 군 산 시 장

### ○ 어업면허 처분 사항

어업의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면적	면허기간	어장위치	면허처분일	어업권자
어류등양식어업	살포식	5602	3.54	2012. 8. 7 ~ 2022. 8. 6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과도 해역	2012.8.7	임택훈 외 1
어류등양식어업	살포식	5603	15.43	2012. 8. 7 ~ 2022. 8. 6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과도 해역	2012.8.7	정난주 외 3
어류등양식어업	살포식	5604	9.7	2012. 8. 7 ~ 2022. 8. 6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과도 해역	2012.8.7	정난주 외 2
어류등양식어업	살포식	5605	5.9	2012. 8. 7 ~ 2022. 8. 6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과도 해역	2012.8.7	정난주 외 2

## 2012/2013년도 어업면허 처분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2-1662호

2012/2013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한 어업면허 처분사항에 대하여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13

## 군 산 시 장

### ○ 어업면허 처분 사항

어업의종류	양식방법	면허번호	면적 (ha)	면허기간	어장위치	면허처분일	어업권자
마을어업	-	5266	45	2012. 8. 13 ~ 2015. 8. 12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해역	2012.8.13	장자도 어촌계 대표 어촌계 장
마을어업	-	5267	5	2012. 8. 13 ~ 2015. 8. 12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해역	2012.8.13	장자도 어촌계 대표 어촌계 장

군산시 공고 제2012-1677호

#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16.





## 군 산 시 장




-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2. 8. 16.
-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2. 8. 16.
-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9점)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재료	등록사유
주민생활 지원과	군산시주민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흑각 전자 이미지 포함	2012.7.26일 조직개편으로 국명칭변경
복지지원과	군산시주민복지국 복지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흑각 전자 이미지 포함	2012.7.26일 조직개편으로 국명칭변경
여성아동 복지과	군산시주민복지국 여성아동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흑각 전자 이미지 포함	2012.7.26일 조직개편으로 국명칭변경
문화체육과	군산시주민복지국 문화체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흑각 전자 이미지 포함	2012.7.26일 조직개편으로 국명칭변경

관광진흥과	군산시주민복지국 관광진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흑각 전자 이미지 포함	2012.7.26일 조직개편으로 국명칭변경
환경위생과	군산시주민복지국 환경위생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흑각 전자 이미지 포함	2012.7.26일 조직개편으로 국명칭변경
자원순환과	군산시주민복지국 자원순환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흑각 전자 이미지 포함	2012.7.26일 조직개편으로 국명칭변경
체육시설 관리과	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흑각 전자 이미지 포함	2012.7.26일 조직개편
차량등록 사업소	군산시장의인 차량민원사무전용		전자 이미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예고서 출력용

4. 폐기공인 및 인영(7점)

관리부서	공 인 명	인 영	재료	폐기사유
주민생활지원과	군산시주민생활지원국주민 생활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흑각 전자 이미지 포함	2012.7.26일 조직개편으로 국명칭변경
복지지원과	군산시주민생활지원국 복지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흑각 전자 이미지 포함	2012.7.26일 조직개편으로 국명칭변경
여성아동 복지과	군산시주민생활지원국 여성아동복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흑각 전자 이미지 포함	2012.7.26일 조직개편으로 국명칭변경
문화체육과	군산시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흑각 전자 이미지 포함	2012.7.26일 조직개편으로 국명칭변경

관광 진흥과	군산시주민생활지원국 관광진흥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후각 전자 이미지 포함	2012.7.26일 조직개편으로 국명칭변경
환경 위생과	군산시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후각 전자 이미지 포함	2012.7.26일 조직개편으로 국명칭변경
자원 순환과	군산시주민생활지원국 자원순환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후각 전자 이미지 포함	2012.7.26일 조직개편으로 국명칭변경

끝.